

2016 광진 「미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공람공고

2016년 광고물 등 정비시범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사전에 의견을 듣고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일

광진구청장

I

사업지구 지정목적

광진구의 대표적인 맛의 거리인 미가로를 2016년 광고물등 정비시범사업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2015년 공중선 지중화 사업과 더불어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성과 가치를 저해하는 불법·노후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미가로를 조성하기 위함.

II

주요내용

- 사업명 : 2016 광진 「미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사업지구의 위치 : 미가로 (자양로 112 ~ 구의로 9, 연장 518m)



- 사업지구의 규모

(2016. 3. 1기준)

건물 동수	업소수	간판수	개선지원 업 소 수	비 고
59	249	615	200	사업구간 내 업소 중 표시허가를 득한 업소와 우수한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은 존치 예정이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개소 초과시에도 지원

-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12월
- 사업비 지원 : 1점포당 2,700천원 이내 지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사업지구 내 주민자율협정제 추진
 - 간판개선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간판 개선주민위원회」 구성·운영
 - 간판설치 시 주민협의를 의한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설정
 - 1업소 광고물 총 수량 1 ~ 2개 이내로 축소
 - 광진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디자인 및 표시방법 개발 적용
 - 지하업소 등 벽면에 간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 건물후퇴(3m이상)로 직접 가시권에서 벗어난 업소는 지주이용간판 사유지내 50cm 이격 설치 허용
- ※ 건물특성, 간판의 디자인상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가이드라인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광고물별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 가능

Ⅲ 의 견 제 출

2016 『미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디자인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우편번호 : 05026 전화번호 : 450-7673, FAX : 3425-1737)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 박희정
전 화 : 450-7673 / 팩 스 : 3425-1737